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418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 개선」

대상기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의 결 일 2020. 9. 7.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교통
안전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9월 7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이건리

위원 권태성

위원 김기표

위원 김태웅

위원 김의환

위원 강재영

위원 정정미

위원 오완호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혜자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별지]

국민의 생활과 권리 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 · 범위 개선 -

2020. 9.



국민권익위원회



■ ■ 목 차 ■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2
2.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에 부모 사망 등 경조사 추가	4
3.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전문교관 표기 범위 확대	6
III. 조치사항	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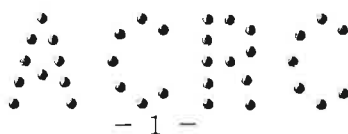
<대통령 강조사항>

- ▶ 의견을 내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19. 11. 19. 국민과의 대화)
- ▶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20. 1. 7. 대통령 신년사)
- ▶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20. 2. 4. 국무회의)

- 위원회는 그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개선 추진
- 그러나 불합리한 각종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국가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필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국민 소통창구'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 ※ 발굴원 :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등
 - 군무원 시험응시를 위한 청각장애 자격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20.6월),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협의('20.7월)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국방부]

□ 현 황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 (토익, 토플, 텡스 등)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시험 대체
 - ※ 국가공무원 공채시험(5급·7급·외교관)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영어'과목 시험 대체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영어능력 검정시험 '듣기' 부분 평가가 어려워, 듣기 부분을 제외한 기준 점수·청각장애 범위 등을 별도 고시하도록 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4의2】

- 국방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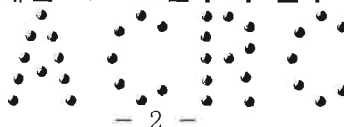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익 (TOEIC)	기준점수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350점 이상	285점 이상	235점 이상

* 2020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일부)

□ 문제점

-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영어능력 검정시험 예외 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범위를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부 '경증' 장애까지 인정

※ '19년까지 '중증 장애'로 제한 ⇨ '20년부터 일부 '경증 장애' 범위 확대



- 반면, 군무원 공채시험은 예외 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의 범위가 '중증'으로만 제한되어, 청각장애 수험생의 불만 유발

- 20년도 일반 군무원 공채시험 계획에서 영어능력검정 시험 기준 점수에 대한 청각장애 응시자 예외 적용범위를 단순히 청각장애(중증)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급, 7급 시험 등은 모두 중증 이외 실질적으로 듣기 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도 듣기시험 점수 예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으나, 군무원은 '중증'으로 한정되어 있어 개선 필요 ('20.5월 국민신문고)

<군무원·국가공무원 청각장애 인정범위 비교>

구분	'20년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공고	'20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공고
청각장애 범위	■ 청각장애(중증) 응시자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기존 청각장애2·3급)	■ 청각장애(중증) 응시자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기존 청각장애2·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이하인 응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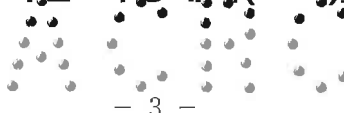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 청력장애 판단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개선방안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선발시, 영어능력 검정시험 예외 점수 적용을 위한 '청각장애 인정 범위' 확대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고시)」 개선 (국방부)



2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에 부모 사망 등 경조사 추가

[보건복지부]

□ 현 황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출석일수를 3단계로 구분하여 보육료* 지원

* 종일반 기준 (0세반) 470천원, (1세반) 414천원, (2세반) 343천원, (3~5세반) 240천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 11일 이상	출석일수 6~10일	출석일수 1~5일
월 보육료지원 단가의 100%	월 보육료지원 단가의 50%	월 보육료지원 단가의 25%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사업안내)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출산,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특례에 따라 출석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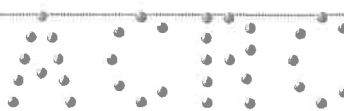
< 2020년 보육사업 안내 출석인정 특례>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최대 2개월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최대 2개월
-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 지정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 오전 등원시간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제점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기준이 미비하여,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속적 민원 제기

-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아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친상을 당하여, 아빠와 어린이집을 등원하던 아이의 출석일수가 부족하게 되었음. 갑작스레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했기에 도움을 주고자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출석인정을 받지 못함. 최소한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경조사에 대한 출석인정 등 배려가 필요함 ('17.11월 국민신문고)



- 부모·아동의 질병, 미세먼지의 사유로는 출석인정이 가능하나 **정작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등원하지 못한 경우가 출석이 불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음. **적어도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 인정 필요의 타당성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내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18.12월 국민신문고)
- 경조사 중 조사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함. 그럼에도 **부모가 상을 당하였을 때, 유치원은 출석인정 사유로 해당되나 같은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인정되지 않음**. 출석인정 특례로 규정되어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보호도 소중하지만, 어린이의 가족을 보내는 일도 상식적으로 출석인정 특례로 인정되도록 개선을 바람('19.1월 국민신문고)
- 다문화 가정으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을 다녀왔으나, **출석인정이 전혀 되지 않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음**. 놀러간 것이 아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지 못한 사유는 최소한 개선이 필요함 ('19.12월 국민신문고)

○ 반면, 유치원은 부모의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인정 특례 사유로 규정

< 202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유아교육일수 인정 특례 (교육부)>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일수에 포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모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개선방안

○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사유에 부모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추가

⇒ 「보육사업안내서」 중 출석인정 특례 개선 (보건복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현 황

- 무인비행기(드론),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을 위해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유인자유기구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시험합격 시, 카드 형태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발급

□ 문제점

- 조종자 증명 취득 후, 추가교육 등을 이수한 후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관' 등록 가능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관 등록조건 >

구분	지도 조종자	실기평가 조종자
조건	■ 비행시간 : 200시간 이상 ■ 조종경력 : 100시간 이상 (무인비행장치)	■ 비행시간 : 300시간 이상 ■ 조종경력 : 150시간 이상 (무인비행장치)
	■ 조종교육 교관과정 이수	■ 실기평가 과정 이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 교육과정, 비행경력 등에 따라 전문교관 자격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 상에는 '지도 조종자' 자격사항만 기재하고 있어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은 증명 불가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은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고, 지도조종자는 카드 뒷면 특기 사항에 표기가 됨. 반면 최상위 자격으로 볼 수 있는 실기평가 조종자는 카드 어디에도 표기가 되지 않아, 증명에 어려움이 있음 (‘20.3월 국민신문고)
- 지도 조종자 자격이 카드 뒷면 특기사항에 표기가 되는 것처럼, 실기평가 조종자도 카드 뒷면 특기사항에 기록이 필요 (‘20.4월 국민신문고)
- 지도 조종자 자격은 뒷면 특기사항에 표기가 되어 휴대하고 다니다가 바로 증명이 가능하나,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은 그러지 못하여 즉시 증빙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교육생 등이 교관에 대한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도 바로 증명 가능하도록 뒷면 특기사항에 기재가 필요 (‘20.6월 국민신문고)

-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교육생 등의 확인 요청시,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 증빙을 위해서는 별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 야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은 지도조종사·실기평가조종자 각 1명 이상의 전문 교관 보유 필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 지정기준)

□ 개선방안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기재 범위에 ‘실기평가 조종자’ 확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표기 개선 예시

국문 앞면 I. 대한민국 II. 자격명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III. 자격번호 : 91-123456 IV. 성명 : 홍길동 IVa. 생년월일 : 1980년 01월 01일 V. 주소 : 서울 VI. 국적 : 대한민국 X. 교부일 : 2018년 01월 01일 IX.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VII.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국문 뒷면 91-123456 홍길동 XII. 한정사항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폭격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XIII. 특기사항 (예시) 지도조종자(무인비행기) - 제한사항 : 실기평가조종자(무인비행기) XIV. 소지자 서명 :
---	--

Ⅲ. 조치사항 및 기한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및 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청각장애 인정 범위 확대	영어능력 검정시험 예외 점수 적용을 위한 '청각장애 인정 범위' 확대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고시)」 개선	국방부	'21.2월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에 부모 사망 등 경조사 추가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사유에 부모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추가 ⇨ 「보육사업안내서」 중 출석인정 특례 개선	보건 복지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전문교관 표기 범위 확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기재 범위에 '실기평가 조종자' 확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 세칙」 개선	한국교통 안전공단	



정 본 입 니 다 .

2020. 9. 8.

국 민 권 익 위 원



A O B C